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 22.(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30. 김육영 의원 외 21인 발의 (의안번호 347호)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다. 상정일자 :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10. 1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직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안 제8조, 제9조)

-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1조)
-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안 제12조)
-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행동강령」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1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용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1)의 조문을 인용함.
- 안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성북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고, 직장 내 괴롭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대한 구청장과 적용 대상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²⁾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예방에 대한 조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원(1명 이상)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횟수(연 1회 이상), 신고 및 구제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는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유급휴가의 명령 등) 및 심리상담 등 지원과 신고한 직원 등 관계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실태조사) 및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는 실태조사 및 그 결과 공표 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안 제13조(개선권고) 및 제14조(비밀유지)는 구청장이 실태조사에 따라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 22.(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30. 정해숙 의원 외 13인 발의 (의안번호 348호)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다. 상정일자 :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10.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구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3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
(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안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제1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1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사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수급자 보장 단위를 '개별가구'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에서 규정한 개별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
 -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개념에 개별가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조례상 사용료 감면의 취지를 볼 때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u>그 가족</u> (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전액	

-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 현행 조문의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가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각 종목별 ‘연합회’의 명칭이 ‘회원단체’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자치구행사(구청장기)는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대회 규모 및 성격 등이 비슷한 회원단체(협회장기)행사는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⁴⁾에 따르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을 확대는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안 제10조제1항제3호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u>국내·외 친선교류의</u>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 : 전액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u>성북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u> : 전액

- 안 제11조제3호는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 수준과 동일한 비율로 배상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규정을 신설한 것임. 이는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체육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안 제11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3.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회원단체’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 22.(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0. 1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39호)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다. 상정일자 :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 시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근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원의 후생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조, 제9조, 제13조)
-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 시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 방법, 배출 장소 및 시간 등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 규격봉투의 종류와 재사용봉투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8조, 별표 3)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별표 1)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22. ~ 2024. 9. 11. (20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 시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6조의3제6항의 신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결유지노력 의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명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소유자의 실질적인 청결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처리가 지체되

어 주민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행정 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안 제6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 ① ~ ⑤ (생략)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2항제5호는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시보조금(26,180천원)을 교부함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안 제8조제2항제5호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생략)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현행과 같음)
5. 공무원 인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인원, 임금 및 <u>후생복지</u> 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제2항은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 방법, 배출 장소 및 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규칙으로 배출시간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례상의 배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

〈안 제11조제2항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략)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일·정시,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배출시간을</u>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일·정시,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배출장소 및</u> 배출시간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18조는 일반규격봉투의 종류(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사업장용)에 대해 재정비하고 재사용봉투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 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 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u>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 및 영업용봉투와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u>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용봉투에 담는다.	② <u>가정 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가정용 및 영업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담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u>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u>사업장</u> 생활폐기물 중 일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u>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u> 중 일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다.

- 안 별표 1은 재활용가능자원 중 의류와 비닐류의 배출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정확한 분리배출 유도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현 행	7. 의 류	· 면류, 나일론 화학섬유 등의 의류 일체	－ 젖지 않게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 ※ 단, 한복, 이불, 시트커버, 카펫류는 제외
개정안	7. 의 류	· 면류, 나일론 화학섬유 등의 의류 일체	－ 지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단, 이불, 베개, 쿠션 등 침구류는 제외
현 행	8. 비닐류 (PE)	· 폐비닐봉투	－ 날장을 몇 번 접어 50매 단위로 묶거나 봉투에 담아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는 봉투는 털거나 물로 씻어 건조 후배출
개정안	8. 비닐류 (PE)	· 폐비닐	－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흄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안 별표 3은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재사용봉투 용량과 판매가격을 명시하고 특수마대를 특수규격봉투로 명칭을 일원화함.

〈안 별표 3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용량	판매가격	구 분	용량	판매가격
가정용	5 ℓ	130	가정용 (재사용)	5 ℓ	130
	10 ℓ	250		10 ℓ	250 (250)
	20 ℓ	490		20 ℓ	490 (490)
	30 ℓ	740		30 ℓ	740
	50 ℓ	1,250		50 ℓ	1,250
영업용	20 ℓ	520	영업용	20 ℓ	520
	30 ℓ	780		30 ℓ	780
	50 ℓ	1,330		50 ℓ	1,330
	75 ℓ	2,000		75 ℓ	2,000
사업장	50 ℓ	2,000	사업장	50 ℓ	2,000
	75 ℓ	3,000		75 ℓ	3,000
특수마대	10 ℓ	1,020	특수규격봉투	10 ℓ	1,020
	20 ℓ	2,040		20 ℓ	2,040
	30 ℓ	3,060		30 ℓ	3,060

- 그 밖의 안 제2조, 제9조, 제13조 및 제30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청결유지를 위하여 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요령 등을 현행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 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 22.(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0. 1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40호)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다. 상정일자 :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서울청년센터 성북

나. 위탁예정기간 : 2025. 03. ~ 2028. 02. [3년]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지역 청년 종합상담 운영 및 자원연계로 청년들의 역량개발 강화
- 지역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청년 간 소통 등 지원
- 지역 밀착형 청년 공간 및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운영
- 그 밖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관련 사업

마. 신청자격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 성북’(이하 ‘청년센터’)의 개관 예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서울청년센터 성북 시설 및 사업개요

- ☐ 시 설 명 : 서울청년센터 성북
- ☐ 위 치 : 성북구 종암동 5길 7, 성북동 260-65번지 2필지
- ☐ 규 모 : 건물 연면적 417㎡, 부지면적 198㎡

건물 1개동(지상 5층)

□ 총사업비 : 4,855백만원(국비 775백만원, 시비 4,040백만원, 구비 40백만원)

구분	면적(m ²)	공 간 구 성	조 감 도
5층	68.65	다목적실(중), 공유부엌	
4층	84.48	다목적실(대)	
3층	89.11	종합상담실, 화상면접실, 다목적실(소)	
2층	93.20	오픈라운지, 회의실	
1층	81.86	운영사무실, 미디어월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명, 직원 5명)

□ 운영시간 : 월~금 10:00~22:00, 토 10:00~17:00(일요일·공휴일 휴관)

□ 사업내용 :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제공, 청년 커뮤니티 지원

□ 위탁기간 : 3년

□ 위탁예산 : 429,000천원(시비 214,500, 구비 214,500천원)

□ 위탁채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신규위탁)

나. 조문 검토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한 타당성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⁵⁾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⁶⁾에 구청장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지원

5)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7)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센터’는 서울 청년들에 대한 종합상담 제공, 정책정보 집적 및 연계,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년 종합상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청년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 ‘청년센터’의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 제1항8) 따라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같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9) 규정에 의거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⑥ 청년 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1.5.6.)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청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 22.(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0. 1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41호)
-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 다. 상정일자 :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1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사회적경제위원회” 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목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조문내용 변경함.(안 제4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용 삭제함.(안 제5조~제9조)
- 조문의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문구 정비함(안 제2조, 제12조~제14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08.22. ~ 2024.09.11.(20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문맥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4조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통해 설치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11)의 취지에 부합함.

〈안 제4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u>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 제4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 그 밖의 안 제2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의2제2항은 조문의 문맥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 됨.

10)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위원회의 통합·폐지)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 22.(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0. 1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42호)

나. 회부일자 : 2024. 10. 15.

다. 상정일자 :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9. 1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12.31.)이 도래함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나. 재계약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다.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사업 기획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교육·홍보·생태계 조성 등)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설치·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동의안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공정무역센터 위탁 현황

□ 시설개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페어라운드'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규 모	- 대지 108.3㎡, 연면적 77.36㎡(23.4평)	
시설내용	- 1층 교육장 47.76㎡ - 2층 공정무역 제품 홍보·체험관 29.60㎡	
역 할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 - 공정무역 교육 및 홍보 거점 공간	

□ 운영현황

- (위탁기간/위탁기관) 1년('24.01.01.~'24.12.31) / (주)트립티 센터장 : 김영규)
- (인력구성) 총 2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 ('24년 예산) 총 111,400천원(전액구비)
 - 인건비 76,680천원, 물건비 7,828천원, 사업비 26,892천원
 - ※자부담 2,700천원 (사업비의 10%)
- ('24년 주요사업) 3개 사업 12개 프로그램

나. 조문 검토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12)에서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센터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

-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
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24.4.11.)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4.4.11.)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
업

추고 있음.

- 같은 조례 제25조의2¹³⁾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¹⁴⁾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추진은 가능하다 사료 되며, ‘공정무역센터’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실시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¹⁵⁾에 따르면 평균 83.21점을 득함.

< 성과평가 결과 >

사업인프라 (14)	사업활동 (12)	사업성과 (60)	프로그램 등 질적 수준 제고 노력 (9)	만족도 제고 노력 (5)	합계
12.79	10.00	48.07	7.88	4.47	83.21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5조의2(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정무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계약체결 등)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5) 2024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성과 평가(2024. 8. 22.)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 평가 후 총점의 평균 값 산출
- 평 가 자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8명(당연직 2명, 외부위원 6명)
- 대상기간 : 2024. 1. 1. ~ 2024. 7. 31.

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1항¹⁶⁾ 따라 3년으로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려는 것으로 선정방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정무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